

「시설 사용 규정」 신구조문대비표

2016. 11. 1. 개정 판 (시행 2016. 11. 1.) → 2016. 2. 29. 개정 판 (시행 2016. 3. 1.)

바뀜 2 · 신설 0 · 삭제 0 · 번호 변경 0

공식 원본 law.syu.ac.kr · <https://suleap.syu.my/r/155/compare?from=384&to=383> · 내려받은 때 2026. 10. 22. 오후 2:12:34 · 밑줄은 바뀐 부분

현 행	개 정 안
제5조(사용료) 사용료는 시설 및 장소사용료와 차량사용료로 분류한다. ① 시설 및 장소사용료 1. 학교에서 실시하는 행사(공식적인 행사)를 제외한 모든 행사는 사용료를 납부 한다. 2. 각 학회 행사는 본 대학 행사로 보지 않는다. 3. 교직원 <u>이 학회 임원으로 외부행사(학회 및 대회) 유치 시에는</u> 사용료의 50%를 납부한다. <개정 2016-11-01> 4. 정규수업 외의 시설사용은 사용료를 납부해야 한다. 5. 모든 행사는 2시간을 기본으로 한다. 6. 금요일에 행하는 모든 행사는 15:00 이전에 종료함을 원칙으로 한다. 7. <삭제> <개정 2016-11-01> 8. 모든 시설의 사용료는 사용하기 전에 사용료를 납부하여야 사용할 수 있다. (단위: 원) 시설명 사용료 추가사용료 (시간당초과) 냉/난방 (일과후/공휴일) 비고 1박 주말(2시간) 평일(2시간) 대강당 (선교70주년기념관) 800,000 600,000 200,000 냉방 200,000 스크린(중앙,좌,우) - 300,000 리허설 1회 당일포함) 난방 250,000 보건복지교육관 (선교90주년기념관)	제5조(사용료) 사용료는 시설 및 장소사용료와 차량사용료로 분류한다. ① 시설 및 장소사용료 1. 학교에서 실시하는 행사(공식적인 행사)를 제외한 모든 행사는 사용료를 납부 한다. 2. 각 학회 행사는 본 대학 행사로 보지 않는다. 3. 교직원이 외부행사(학회 및 대회) 유치 시에도 사용료를 납부한다. 4. 정규수업 외의 시설사용은 사용료를 납부해야 한다. 5. 모든 행사는 2시간을 기본으로 한다. 6. 금요일에 행하는 모든 행사는 15:00 이전에 종료함을 원칙으로 한다. 7. <u>동아리 활동으로 인한 장소사용(운동장/테니스장)은 주간에 실시하며, 야간 활동 시 라이트 사용은 불허한다.</u> 8. 모든 시설의 사용료는 사용하기 전에 사용료를 납부하여야 사용할 수 있다. (단위: 원) 시설명 사용료 추가사용료 (시간당초과) 냉/난방 (일과후/공휴일) 비고 1박 주말(2시간) 평일(2시간) 대강당 (선교70주년기념관) 800,000 600,000 200,000 냉방 200,000 스크린(중앙,좌,우) - 300,000 리허설 1회 당일포함) 난방 250,000 보건복지교육관

현행	개정안
350석	(선교90주년기념관)
450,000	350석
250,000	450,000
100,000	250,000
냉방	100,000
100,000	냉방
리허설 1회	100,000
- 100,000	리허설 1회
난방	- 100,000
150,000	난방
제2과학관(세)	150,000
150석	제2과학관(세)
150,000	150석
50,000	150,000
냉방	50,000
100,000	냉방
난방	100,000
150,000	난방
요한관 강당	150,000
450석	요한관 강당
550,000	450석
350,000	550,000
100,000	350,000
냉방	100,000
150,000	냉방
난방	150,000
200,000	난방
야외행사	200,000
100,000	야외행사
야외예배(안)	100,000
무료	야외예배(안)
침례탕/분수대	무료
80,000	침례탕/분수대
용할 경우 - 40,000	80,000
손님방	용할 경우 - 40,000
50,000	손님방
(\$ 50)	50,000
2인 1실 사용시	(\$ 50)
- 70,000(\$ 70)	2인 1실 사용시
인 성	- 70,000(\$ 70)
교육관	인 성
침실	교육관
30,000	침실
총 17실	30,000
강의실(1일)	총 17실
50,000	강의실(1일)
신학관, 체육관, 백주년기념관3층 대회의실,	50,000
장근청홀,	신학관, 체육관, 백주년기념관3층 대회의실,

현 행	개 정 안
음악관 합창합주실	장근청홀,
150,000	음악관 합창합주실
50,000	150,000
냉방	50,000
100,000	냉방
2010 행정협의회 회의록(10-22)시설 및 장소 사용료 규정	100,000
개정 내용 결의	2010 행정협의회 회의록(10-22)시설 및 장소 사용료 규정
난방	개정 내용 결의
150,000	난방
일반 강의실(1일)	150,000
50,000	일반 강의실(1일)
유비쿼터스실	50,000
(에스라관, 바울관)	유비쿼터스실
100,000	(에스라관, 바울관)
50,000	100,000
1일 - 200,000	50,000
인성교육수련원	1일 - 200,000
(안면도 체육관)	인성교육수련원
구분	(안면도 체육관)
1시간	구분
3시간	1시간
종일	3시간
냉·난방비 및 전기,상수도비 포함	종일
50% 할인	냉·난방비 및 전기,상수도비 포함
동절기	50% 할인
80,000	동절기
150,000	80,000
250,000	150,000
하절기	250,000
90,000	하절기
170,000	90,000
280,000	170,000
인성교육수련원	280,000
(체육관2층 숙소)	인성교육수련원
주말-50,000	(체육관2층 숙소)
평일-30,000	주말-50,000
교직원사용료 무료	평일-30,000
체육관(주경기장)	교직원사용료 무료
체육시설 대관 기준표에 의한다.	체육관(주경기장)
운동장(인조잔디구장)	체육시설 대관 기준표에 의한다.
테니스장	운동장(인조잔디구장)
* 기타 표에 적시되지 않은 사항에 대해서는 소행정협의회 및	테니스장
해당 회의의 결의에 따른다.	* 기타 표에 적시되지 않은 사항에 대해서는 소행정협의회 및
㊟ 차량사용료	해당 회의의 결의에 따른다.
구분	㊟ 차량사용료
사용거리	구분
기준	사용거리
사용료	기준

현행	개정안
버스 100Km 이내 1회 사용 300,000원 101Km~300Km 1회 사용 350,000원 301Km~500Km 1일 사용 400,000원 501Km 이상 1일 사용 500,000원 도로비, 주차비, 기사 수고비는 사용자 부담 - 버스는 휴일, 방학중만 사용이 가능하다. - 승용차, 승합차, 화물차의 차량사용료는 수송팀 내부규정으로 정한다. - 도로교통법규 범칙금 및 사고로 야기되는 차량수리비는 사용자가 부담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사용료 버스 100Km 이내 1회 사용 300,000원 101Km~300Km 1회 사용 350,000원 301Km~500Km 1일 사용 400,000원 501Km 이상 1일 사용 500,000원 도로비, 주차비, 기사 수고비는 사용자 부담 - 버스는 휴일, 방학중만 사용이 가능하다. - 승용차, 승합차, 화물차의 차량사용료는 수송팀 내부규정으로 정한다. - 도로교통법규 범칙금 및 사고로 야기되는 차량수리비는 사용자가 부담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제6조(사용절차) ① 모든 시설 사용허가는 4주전까지 사무처 총무과에 신청하여 행정협의회 승인을 득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개정 2016-11-01〉 1. 시설물, 기타: 대강당, 보건복지기념관, 제2과학관세미나실, 홍명기홀, 장근청 홀 체육문화센터, 운동장, 안면도 인성교육수련원 체육관, 버스 대여〈신설 2016-11-01〉 2. 시설 및 장소 사용료: 100만원 이상〈신설 2016-11-01〉 3. 행정협의회에서 결의가 필요한 경우〈신설 2016-11-01〉 ② 시설사용 하루 전까지 총무과에 시설사용료를 납부한다. ③ 차량 사용은 1주전까지 수송팀에 신청하여, 사용 전·후 요금을 정산한다.	제6조(사용절차) ① 모든 시설 사용허가는 4주전까지 사무처 총무과에 신청하여 소행정협회의 승인을 득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② 시설사용 하루 전까지 총무과에 시설사용료를 납부한다. ③ 차량 사용은 1주전까지 수송팀에 신청하여, 사용 전·후 요금을 정산한다.